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16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이영실 의원외 10명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3월 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내용이 서울시 정책과 상이하고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과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추진을 규정함(안 제3조)

○ 다자녀 가족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자녀 가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무상 보육 지원 등 영유아의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이 변경되어 사실상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원 내용과 다자녀 가족정책자문단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다자녀 가족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1]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안은 8개의 본칙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설정하고,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규정하였으며(안 제2조),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수립·추진을 명시하였음(안 제3조).

- 또한 다자녀 가족 지원 내용(안 제5조),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안 제6조), 실태조사 등(안 제7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1)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는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는 전부개정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부합하고 있음

<전부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5조(다자녀가족 지원)
제2조(정의)	제6조(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실태조사 등)
제4조(지원대상)	제8조(시행규칙)

2 주요사항 검토

□ 제명 변경 (제명)

○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동 전부개정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총칙 규정(안 제1조～제4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 대상 (안 제4조)

○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족이란 안 제2조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서도 동일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정책의 통일성 및 합계출산율이 채 1명이 안되는 서울시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출생이나 입양 외에 절차를 통해 위탁 양육을 하는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자녀 가족 지원 사항 (안 제5조)

○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 시, 관람료나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시립 미술관, 박물관 등의 이용시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조례안의 목적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거, 교육, 취창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이라는 범위와 비교해 볼 때, 그 지원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정책의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것임.

□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및 실태조사 (안 제6조, 제7조)

○ 개정안(안 제6조)은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5조와 관련하여 그 지원 내용이 부족한 점 등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정책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책자문단은 시장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바, 집행부에서도 자문단 운영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실태조사(안 제7조) 역시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의 수요 및 욕구 등에 대한 과학적 추계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정보를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정교한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되는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3 종합 의견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채 1명이 안되는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초저출산 상태로,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0.76명, ’18년도)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임.

- 다자녀는 잠재된 출생동력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은 저출산 대응

에 있어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현행 서울시 정책과 조례가 다소 미비한 상황임.

○ 본 조례안은 보육료 지원 등 현행 조례에서 시행이 불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사항들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다자녀 가족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다자녀 가족 지원 사항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한정되어 시장에 책무에서 규정한 범위에 비해 그 규모나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향후 정책자문단이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별첨 :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유형	서비스명	소관 기관	구비서류	신청절차	접수 기관
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 카드 발급 시 서울시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서울시 (가족담당관)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방문	・신분확인용 카드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 우리은행영업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관리공단	・가족관계등록부	방문	국민연금 공단지사
세자녀 이상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미성년자녀)	서울시 (임대주택과)	・신분증 ※ 세부 구비서류 등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서울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85m^2 이하 주택 특별분양청약자격)	방문 인터넷	sh공사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18세 미만 3자녀)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신분증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부·모 신분증, 자격증명 및 소득증빙서류 (셋째자녀의 경우 제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신청서	방문	시군구 보건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영유아의료비	보건복지부	・부·모 신분증, 진단서, 영수증, 자격증명서류	방문	시군구 보건소
	(다자녀)주택특별 공급제도 (미성년자녀)	국토교통부	・특별공급신청서등 ・자격증명서류	방문	LH공사
	(다자녀)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미성년자녀)	국토교통부	・매매계약서 및 자격증명서류	방문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금융기관
	(다자녀)도시가스 요금경감 (만 18세 미만)	한국가스공사	・요금경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명을 준비하여 방문, 팩스, 우편	관할 도시가스 회사
	(다자녀)전기료감액	한국전력공사	・감액신청서 ・자격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전력공사방문, 우편, 아파트	관할 전력공사

유형	서비스명	소관 기관	구비서류	신청절차	접수 기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등록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실증명)	관리사무소	지점
	(다자녀)난방비감면	한국 지역 난방 공사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연1회 산정 후 지급), 설치지역	지역 난방 공사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만 18세 미만)	행정 자치부	・자격증명서류	방문 (가족관계 등록부 지참)	주소지시 군구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6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이영실·이병도·김화숙·오현정·김소양·김혜련·김동식·김용연·봉양순·서윤기·이정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내용이 서울시 정책과 상이하고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과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라.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추진을 규정함(안 제3조)

마. 다자녀 가족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바. 다자녀 가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자녀 가족의 주거, 교육, 취업·창업, 문화·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자녀 가족 지원)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의 신설에 따른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신설에 따른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실시 비용 발생

-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같은 조례안 제5조(다자녀 가족 지원)의 신설로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추진 사업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붙임 참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39,500천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39,500천원(연평균 27,9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안 제6조)	9,900	9,900	9,900	9,900	9,900	49,500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실시 비용 (안 제7조)	30,000	-	30,000	-	30,000	90,000
	소계(b)	39,900	9,900	39,900	9,900	39,900	139,500
□총 비용(b-a)		39,900	9,900	39,900	9,900	39,900	139,500

○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 49,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연간 다자녀가족정책자문단운영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비용

=(참석수당×수당지급 참석인원×개최건수)+(업무추진경비×참석인원×개최건수)

=(150,000원×9명×6회)+(30,000원×10명×6회)

=9,900천원

○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실시 비용 ≒ 90,000천원

- 다자녀 가족 실태조사 실시 비용(2년마다 1회)

= 조사비용×조사횟수

= 30,000천원×3회

= 90,000천원

※ 참고)실태조사 단가(2018년, 2019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종합실태조사 30,000천원(2019년)
- 청소년실태조사 30,000천원(2018년)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2019년)
- 노숙인실태조사 63,000천원(2019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